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6 호

제출년월일 : 2003. 3. .
제 출 자 : 예 산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일자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조정(안 제22조의2제3항)
○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함.(안 제40조의3제1항)
○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 군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1일부터 7월 10일에서 7월 1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 조정(안 제98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 기타자료
- 충청남도세정13400-2209(2002.12.27)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시·군세조례 개정내용 송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20"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읍·면"을 "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읍·면"을 "군"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② (생 략)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다음달 15일----------.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② (생 략)	제40조의3(세율) ①----------1,000분의 20----------.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군----------. ②----------군----------.
제98조(납기) ① (생략)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7월 31일----------.